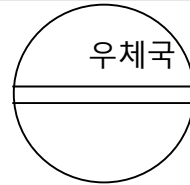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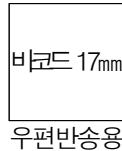
☞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보내는 사람



과세번호			
담당자		문의처	

받는 사람



근거법률
「지방세징수법」 제32조

납 부 장 소
전국 은행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산림조합

안 내
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
 할 경우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3
 조에 따라 귀하(귀 법인)의 재
 산을 압류하게 됩니다.



지방자치단체 활용란

※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

시·군·구		납부최고서 겸 영수증 (납세자용)									
납세번호	과세기관	검	회계	과목	세목	연도	월	구분	읍면동	과세번호	검
■ 제2차 납세의무자(양도담보권자 등) 성명(법인명): 납세자 번호: 주 소: 지 방 세											
■ 납세자 성명(법인명): 납세자 번호: 주 소:											
기관번호		세목									
납세연월기		과세번호									
전자납부 번호											
세 목		납부할 세액									
납부할 금액											
수납은행용 비코드		지방자치 단체의 장									
수납용		직인									

세 목	지방세 (가산세 포함)	가산금	합계	
납부할 금액				

납부할 금액이 공란이면 뒤쪽의 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. ※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발행일 년 월 일 수납일 년 월 일 전자납부
직인 수납인

지방자치단체의 장

안 내 말 씀

-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 -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: 납부기한이 지나면 3%의 가산금이 가산되고,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.75%(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.2%)의 증가산금이 가산(최대 60개월까지)됩니다.

※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증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-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: 납부기한이 지나면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,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.66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(최대 60개월까지)됩니다.

※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납부최고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는 때에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.
- 납부최고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또는 읍·면·동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,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납부최고서를 폐기하시기 바랍니다.
-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, 농어촌특별세액이 ()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()%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(5년간)됩니다.
-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7월 1일 이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, 농어촌특별세액이 ()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()%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(5년간)됩니다.
-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납기 후 세액으로 납부하셔야 하며,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할 경우 납부일자별 납부할 세액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◎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
[납부일자별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및 납부할 금액]

일자	농어촌특별세		납부할 금액
	가산세(체납분)	합계	

일자	농어촌특별세		납부할 금액
	가산세(체납분)	합계	

- ◎ 2022년 2월 3일 전 납세의무 성립분

- 납기 후 1개월까지는 3% 가산금이 부과되고, 이후에는 1개월마다 0.75%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.

7. 납부최고서에 고지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금고, 전국 은행, 우체국 등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, 초과납부한 지방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.

8.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·ARS·ATM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(www.wetax.go.kr 또는 위택스 앱)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.

◆ 전자납부 이용방법

- ◎ 인터넷뱅킹: [금융기관 홈페이지] 접속 ⇒ [인터넷뱅킹, 온라인서비스, 지방세납부 등] 선택(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)
- ◎ ARS 납부: [거래은행의 ARS전화] 접속 ⇒ [지방세납부 등] 선택 ⇒ 안내에 따라 납부
- ◎ ATM 납부: [거래은행의 ATM기] 이용 ⇒ [지방세납부 등] 선택 ⇒ [납부번호입력] ⇒ [납부]
- ◎ 위택스(www.wetax.go.kr 또는 위택스 앱)나 인터넷지로(www.giro.or.kr)를 이용하면 365일 지방세납부 가능(07:00 ~ 23:30)

지방세납부 →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→ 공동인증서 확인 →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,
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→ 납부하기 →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→ 납부확인 → 지방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

※ 신용카드 납부는 위택스, 카드로택스(www.cardrotax.or.kr), 은행CD/ATM기에서 납부 가능하며,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.

※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.